



# 대기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 1. 대기환경보전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연재\*

### 3-6-7. 가동개시신고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근거 규정 : 법 제30조

#### 가. 신고시기

- 가동개시신고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됨
- 변경 등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대상
  -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20/100이상 증설

#### 나. 신고서 처리

- 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기관에서는 현장 확인없이 서류상으로 적·부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 \*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할 완료한 후 배출시설을 부분적으로 가동개시 신고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있음
- 처리기간 : 즉시

#### 다. 시운전

- 가동개시 신고 시 시운전 할 수 있는 배출시설(시행령 제16조)
  -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 배연탈질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 시운전기간 :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3-6-8. 권리·의무의 승계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 사망, 합병한 경우 및 임대차하는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대하여 규정

❖ 근거 규정 : 법 제27조

○ 권리의무의 승계 사항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 임차인의 경우는 아래의 규정 적용 시 사업자로 간주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측정기기 부착
-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 (허가취소는 제외)
- 배출부과금 부과
- 자가 측정
- 환경기술인 임명
- 보고·검사

3-6-9. 다른 법령의 허가 의제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근거 규정 : 법 제24조

○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변경신고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3-6-10. 사업장의 분류

❖ 대기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

❖ 근거 규정 : 법 제25조, 시행령 제13조

○ 사업장 분류기준

종 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3-6-11. 자가측정

가. 목적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나. 측정방법

- 자체측정 : 측정장비, 실험실 등을 갖추어야 함
- 위탁측정 : 자가측정 대행업체에 위탁

다. 측정항목

- 배출허용기준 설정항목 중 해당항목
-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 채취기록지”는 6개월간 보존

라. 측정횟수

1종 시설	2종 시설	3종 시설	그 외 시설
주 1회 이상	월 2회 이상	매 2월에 1회 이상	매반기 1회 이상

마. 자가측정 예외

- 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하는 시설 중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

-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생략
-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 시설의 증유 등 연료 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 분석표로 같음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 면제. 먼지항목에 대한 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연항목 자가측정을 면제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그 항목에 한정하여 자동측정 자료를 자가측정 자료에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함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 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하여야 함
-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시설로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반기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매 2월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음
-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 결과(자가측정 및 행정기관 오염도 검사 포함) 배출허용 기준의 30%이내인 경우에는 자가측정을 횟수를 완화('09. 1. 14 개정)

1종 배출구	2종 배출구	3종 배출구	그 외 시설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매분기 1회 이상	년 1회 이상

- 자가측정을 위탁받은 측정대행업자가 최근 2년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가측정 완화 기준 적용 제외('09. 1. 14 개정)

바. 대기분야 자가측정제도 존치사유

구 분	대 기 분 야	수 질 분 야
측정여부	의무사항	권장사항
배출시설	개별시설로 규정	공정단위로 규정
오염물질배출	시설별로 다양	폐수처리장에서 배출
시료채취	시료채취시 3~4시간 소요	채수가 용이
특 성	측정을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 시설관리가 곤란하며, 행정기관에서 오염도 검사 시 사업장 부담	가동상태 수시 확인 가능

사. 자가측정 실무

- 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하는 시설 중 일반오염물질과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특정유해물질에 관하여 월 2회 이상 측정하면 됨
- 자가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법에서 규정하는 측정 횟수를 준수할 수 없을 때는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3-6-12. 환경기술인

가. 목적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
-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정함

나.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 배출시설 등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도록 할 것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
- 자가측정 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 자가측정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 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관리 보관할 것
-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종	2종	3종	4종, 5종
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환경기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업무 종사자	사업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인자

라. 환경기술인 겸임 등

- 환경기술인이 각각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대기수질 소음 진동분야를 겸임할 수 있음
- 동일한 사업단지 등에서는 4개 사업장(혹은 3개)까지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7조
- 환경기술인을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마. 자격기준 예외 규정

- 4종 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함
- 1종 2종 사업장 중 일일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인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인은 3종 사업장의 자격기준에 적합자로 대체할 수 있음

- 방지시설 설치면제(전체 면제) 사업장과 공동방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내용 \***

① 법제29조제4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수질, 대기, 보건관리자 1

② 법제29조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면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행령제12조제7항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대기과 보건관리자를 자격기준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1인 채용 가능 대기-수질 : 관련법에서 인정

- 일반보일러(소각보일러 제외)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

바. 환경기술인의 교육

-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09. 1. 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교육기간 단축(5▶4일)  
- 신규임용 :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 3년마다 1회 이상
-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대상을 고용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됨

자료제공 :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처  
다음호에 계속 ...

